장학 규정

□ 제정 : 1980. 9. 1.
□ 개정 : 1982. 9. 10.
□ 개정 : 1984. 2. 10.
□ 개정 : 1986. 8. 28.
□ 개정 : 1987. 9. 1.
□ 개정 : 1988. 8. 29.
□ 개정 : 1989. 4. 1.
□ 개정 : 1992. 3. 1.
□ 개정 : 1994. 9. 1.
□ 개정 : 1995. 3. 1.
□ 개정 : 1996. 3. 1.
□ 개정 : 1997. 3. 1.
□ 개정 : 2000. 3. 2.
□ 개정 : 2001. 2. 26.
□ 개정 : 2003. 8. 25.
□ 개정 : 2004. 8. 1.
□ 개정 : 2005. 3. 1.
□ 개정 : 2005. 9. 1.
□ 개정 : 2006. 9. 1.
□ 개정 : 2006. 9. 20.
□ 개정 : 2007. 3. 21.
□ 개정 : 2007. 9. 28.
□ 개정 : 2009. 4. 21.
□ 개정 : 2009. 10. 20.
□ 개정 : 2010. 4. 26.
□ 개정 : 2011. 4. 19.
□ 개정 : 2011. 5. 24.
□ 개정 : 2011. 6. 30.
□ 개정 : 2012. 6. 29.
□ 개정 : 2012. 12. 12.
□ 개정 : 2013. 2. 7.
□ 개정 : 2013. 10. 29.
□ 개정 : 2014. 1. 21.
□ 개정 : 2014. 11. 6.
□ 개정 : 2015. 1. 26.
□ 개정 : 2015. 3. 20.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5. 7. 29.
□ 개정 : 2016. 3. 9.
□ 개정 : 2017. 3. 1.
□ 개정 : 2017. 8. 31.
□ 개정 : 2017. 12. 28.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8. 8. 31.
□ 개정 : 2019. 3. 1.
□ 개정 : 2019. 8. 26.
□ 개정 : 2019. 11. 29.
□ 개정 : 2020. 3. 13.
□ 개정 : 2020. 9. 1.
□ 개정 : 2020. 11. 9.
□ 개정 : 2021. 2. 26.
□ 개정 : 2021. 9. 1.
□ 개정 : 2021. 12. 1.
□ 개정 : 2022. 3. 1.
□ 개정 : 2022. 6. 1.
□ 개정 : 2023. 6. 1.
□ 개정 : 2023. 12.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7조(시행세칙 제56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없이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 장학업무는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장학위원회) 본교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입학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일반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 2(장학사정관)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의 3(장학사정관 임명) 장학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 4(장학사정관 임기) 장학사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

제9조(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교내 장학금 : 교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고운장학금 : 본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로 학생입학처장이 추천한 자
6.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과 학년별 상위10% 이내인자(단, 과 학년별 교육과정이 상이한 경우 교육과정별 순위 적용)
7. 삭제

8. 공로장학금 : 총학생회간부 활동자로 학생입학처장이 추천한 자-등록금 외
9. 기자장학금 : 미디어센터 활동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 하는 자-등록금 외
10. 봉사장학금 : 교내 행정부서 등에서 봉사 신청 후 일정기간 봉사한 자-등록금 외
11. 선행장학금 : 재학 중 선행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 장 또는 학생입학처장이 추천하는 자-등록금 외
12. 교직원자녀장학금 : 본교 재단에서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 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 자녀로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자
13. 가족장학금 : 가족 2인(출가자 제외)이 본교에 재학하는 자로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자
14. 복지장학금 : 국가장학 신청결과 8분위 이하의 소득구간으로 확인된 자중 기간 내 교내 복지장학금 신청자 또는 장학사정관에 의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자로 추천된 자(단, 장학사정관 추천자는 대상자에 따라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 와 무관함)
15. 산업체위탁특별장학금 :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하여 재직 중인 자
16. 원호장학금 : 법이 정하는 원호대상자 및 그 자녀 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해진 기간 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자(단, 교육지원 대상자는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와 무관함)
17. 교육자자녀장학금 : 초, 중, 고, 국·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 중인 교원자녀로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자(단,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에 한하며, 교장, 교감, 직원 등 학교운영 관련 참여 교원은 제외)
18. 삭제
19. 유공장학금 :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로 학생입학처장이 추천하는 자
20. 외국인유학생특별장학금 : 본교 외국인 입학전형 정규과정에 입학 후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 3.0, 3.5, 4.0) 이상 성적우수자(단, 성적관련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21. 교환학생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외자매 또는 협의대학에서 해당 학기를 이수한 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등록금 외
22. 다문화가정장학금 : 다문화가정의 가족으로 기간 내 해당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자
23. 경진대회장학금 : 교내 각종 경연, 경시, 경진,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단, 종류에 따라 재학생은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와 무관하며, 본교 재학생이 아닌자가 참가하여 입상하는 경우, 장학금은 본교 입학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등록금 외
24. 다자녀가정장학금 : 국가다자녀장학 신청결과 다자녀로 확인된 자중 기간 내 교내 다자녀

가정장학금 신청자

25. 장애인장학금 : 장애등급(1급~4급)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단,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 와 무관함)
26. 역량우수장학금 : 개인의 역량과 면학의지가 투철한 자로 재학 중 TOEIC 700점, JPT 700점, HSK 5급,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기간 내 해당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자(재학 중 각 1회에 한함) 또는 향상(튜터링), 동행(동행학습), 취업(특강) 등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 후 프로그램별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단, 역량우수 향상, 동행, 취업 등은 프로그램에 따라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와 무관함)-등록금 외
27. 전공심화과정특별장학금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28. 대응투자장학금 : 해당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등록금 내 또는 외로 해당사업 운영기준에 준함)
29. 마일리지장학금 : 정규학기 중 마일리지 적립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선발기준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단, 프로그램에 따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 와 무관함)-등록금 외
30. 특별장학금 : 당해 연도 장학금 예산범위 내 위원회 별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단, 대상자에 따라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와 무관함)
31. 재난장학금 : 재난안전법 제3조 1호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등으로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의 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자(단, 대상자에 따라 성적 및 정규학기 초과 또는 졸업유예와 무관함)
32. 지역인재장학금 : 화성시 또는 수원시 소재지 고등학교 졸업 후 수시 및 정시 최초 합격한 자
33. 성인학습과정특별장학금 : 성인학습과정으로 입학한 자

② 교외 장학금 : 기업, 교외단체(개인포함) 등 교외기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추천 한다.

1. 교외기관 구분은 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과 법률에 의한 장학법인체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장 학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한다.
2.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불법·부당하거나 특정한 자를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적절성 판단 여부에 따라 기준 재요청 필요)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추천 한다.
3.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평정 2.0) 이상인 자로서 가계곤란, 성적우수, 기 장학금 수혜, 자격요건(근면 · 성실,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관련 부서장, 학생입학처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추천하며, 그 외

사항은 교내 장학규정에 따른다.

4. 교외기관이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발・추천 기준,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자료에 교외기관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교외기관이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 요구한 기부금 약정서, 추천요청서 등에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장학생을 추천 요청함에 있어, 본인과 특정학생 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받아 장학생 선발·추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재요청하여 선발·추천 또는 거부한다.
5. 교외기관의 장학생 선발·추천은 학생입학처장의 전결사항으로 추천한다.(위원회 심의생략)
6. 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7. 교외장학금 장학생 선발·추천기준, 방법, 절차 및 선발결과(개인정보 불포함)를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지방자차단체 장학금 : 지방자치단체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3. 삭제

제 4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10조(장학금 수혜신청) 모든 장학금은 지급목적 이행결과로 학기개시일(개강일)로부터 90일 전·후에 신청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매학기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학기말에 신청하여 다음 학

기 감면 적용을 원칙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공지한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해당 증빙서류(증명서)를 준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해당 부서장, 학생입학처장 등의 추천(일괄추천 포함)을 받아 학생지원팀에 신청(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기간 종료 전에 확인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을 예외로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제11조(장학생 선발 및 추천) ① 각종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개인의 역량과 면학 의지가 투철하고,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직전(최종)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 2.0) 이상 취득한자를 기준으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 해당 부서장, 학생입학처장 등의 개별 또는 일괄추천으로 선발한다.

② 삭제

③ 직전학기 성적산출 및 정규학기 초과(졸업유예 포함)는 계절 학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 1에 기준으로 한다.

1. 취득학점 :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재수강 삭제과목 제외
2. 취득평점 : F학점 및 이수 후 재수강 삭제 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3. 전과성적 : 전과 전 성적 적용
4. 삭제성적 : 삭제 전 원(본래) 성적으로 1호 내지 2호 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
5. 성적무관 : 신(재)입학 및 편입(전공심화)생 첫 학기와 제9조 ①항 14호, 16호, 23호, 25호, 26호, 28호, 29호, 30호, 31호 중 예외사항
6. 산출불가 : 교환학기 등으로 한 학기 전체 성적산출이 불가능 한 경우 산출된 최종학기 성적 반영(산출된 최종학기 원 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무관)
7. 정규학기 초과(졸업유예 포함) : 제9조 ①항 14호, 16호, 25호 중 예외사항과 등록금 전액 등록대상자(단, 제9조 ①항, 6호 내지 9호까지 제외)
8.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의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장학금 수혜기간) 교내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제13조(장학금 수혜) ① 등록금 부담완화(등록금 보존)를 위해 수혜 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중복(차액)수혜가 가능하다.(단, 전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혜금액은 전과 후 정산한다.)

②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 발생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선발일정에 따라 조정한다.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완화 외(등록금 보존 외) 장학금은 본 규정에 명시된 장학금 외, 학업장려, 생활비지원, 실습비, 취업지원, 근로봉사 등은 해당(공문) 근거로 수혜 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④ 중복수혜가 불가능한 장학금은 학기 중(공로, 기자, 봉사, 선행, 국가근로) 또는 방학 중(봉사,

국가근로)이며, 그 외 중복수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장학금 또는 해당 근거가 있는 장학금도 포함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③항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완화(등록금 보존)를 목적으로 감면 또는 지급 한다.

⑥ ⑤항의 교내장학금은 일십만원 이상(백원 단위 절사) 차액을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잔액이 일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교내장학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10만원 미만의 차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⑦ 장학종류별 수혜 인원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제14조(장학금 취소 또는 회수)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는 장학금을 취소하거나, 전액 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회수한다.

단, 교외(국가, 지방자치 단체, 사설 및 기타 등)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장학금 처리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다.

단,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와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수혜받은 장학금을 취소하거나 회수 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휴학자[등록금 이연자 또는 지급(대상)자로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자와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자는 제외]
2. 자퇴자 및 제적자, 장기결석자, 졸업학기 유예자, 이중수혜자, 근면·성실과 품행이 방정하지 못 한자
3. 학칙 위반으로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로 지적 또는 경고를 받은 자
4. 장학금 감면 또는 지급일 현재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5. 장학금 수혜자격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있다고 인정된 자
6. 직전(최종)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 2.0) 미만인자(제11조 ③항 5호, 7호, 8호 관련사항 제외)
7. 해당학기에 수혜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
8. 정규학기 초과자(제11조 ③항 7호 8호 관련사항 제외)
9. 학과 교수, 관련 부서장, 학생입학처장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불가 대상자로 확인되는 자
10. 교내 포털시스템에 기간 내 수혜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계좌가 오류인자
11. 당해학기 성적산출 이후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 학사경고 자 또는 유급자
12. 학교를 경유하지 않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이 확인되는 경우
13. 기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오 지급(전산오류, 대상자

변경 등)으로 확인되는 자

제15조(장학금 지급 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 기 지급(등록금 감면)과 당기지급(학생계좌 지급)으로 구분하며, 해당학기 지급목적 이행결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학적 또는 학적변동 등에 의해 등록금 전액을 납부했거나 이월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으로 등록금 일부를 분할로 납부한 후 지급되는 장학금이 납부한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잔액과 등록금 분할 납부자 등록금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과 등록금 대체를 먼저 할 수 있다.

③ 학생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계좌오류로 발생하는 지급지연과 지급계좌 확인 등 원활한 장학업무를 위하여 교내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증 이면계좌로 지급하고, 미등록 또는 등록 계좌의 오류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해당자는 종강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여야하며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계좌가 오류인 경우 지급예정 장학금은 수혜거부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14조 6항 (장학금 지급의 중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2항 17호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제13조 ①항 6호, 7호, 8호는 200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제9조 ②항 7호, 8호, 10호, 제13조 ①항 4호, 9호는 200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제9조 ①항 7호와 24호는 201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전 24호 적용대상자가 개정 후 국가다자녀 신청자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전 자격으로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①항 10호는 2018년 1월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①항 24호, 제10조 대상자중 2020년 1학기 감면장학금 신청기간 전과 신청 후 등록기간 전에 군 입영(일반 제외) 휴학 자는 복학예정 학기(재 휴학 제외)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1항 1호 내지 4호는 2022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6호 내지 7호의 경우 2020년 이전 입학자(학적 변동 자는 제외)는 졸업학기까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32호는 2021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1항 33호는 2022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